

2023 국내 입양가정 사후서비스 수행기관 모집

2023. 1. 2(화)~2023. 1. 13(금)



사업소개

입양 후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생애주기별 서비스 지원과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선정된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제출서류 및 기간

- 서류접수: 2023. 1. 13(금)까지
- 제출서류: 반드시 우리원 지정서식 작성
- 23년 국내 입양가정 통합서비스-자조모임 지원사업 신청서 (직인 날인, 공문 포함)
- 사업계획서, 담당인력 현황표, 인력운영 계획서 등

지원내용

* 세부내용

구분	내용
통합서비스	1. 생애주기별 교육 · 유아기, 아동기, 청소년기 발달단계 부모교육
	2. 특수육구 아동 · 특수육구(경계선지능) 아동의 양육방법 교육 등
	3. 선택 지원사업 · 입양아동 부모상담, 부모교육 등 · 입양인식개선 캠페인, 행사, 홍보 활동
자조모임	4. 자조모임 · 지역별, 연령별, 또래별 자조모임 · 부모교육 및 입양가정 행사 등

• 세부프로그램 계획 시 참고사항

- 사업 분류의 4가지 항목을 자유롭게 선정하여 계획
-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기관당 6천만원 이하로 계획
- 자조모임은 교육 또는 행사를 제외하고 모임당 200만원 이하로 계획
- 교육 또는 행사는 예산 제한 없음
- 자조모임별 50명 기준 200만원 예산으로 계획 수립 → 50명 초과 시 인당 4만원 추가하여 계획 수립

단, 50명 초과되는 계획은 계획대비 인원 감소 시 프로그램 회기를 늘려 계획 진행
세부내용은 23년 국내 입양가정 사후서비스 지원사업 안내서 참조

신청문의

- 문의처: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 (02-6454-8645)
- 관련사이트: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(<https://www.ncrc.or.kr/ncrc/main.do>)

신청방법

- 문서24사이트 (<http://open.go.kr/index.do>) 전자문서 제출
- 수신처: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 (문서24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참고)

신청자격

- 사회복지법인 제2조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및 가족 대상 등 입양 관련 사업 수행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
-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(재단법인, 사단법인 등)
-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법인(민간단체)
- 지원 제외 대상
- 법인이 아닌 단체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또는 친목단체 기금 및 보조금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부당집행, 불법행위를 행한 단체

심사 및 선정기준

- 심사위원회에서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국내 입양가정 통합서비스-자조모임 지원 등 위탁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
- 선정기준(평가항목)에 의해 서류심사 (필요시 대면심사 진행)
- 평가항목: 기관평가, 사업평가, 예산평가
- 심사위원: 4명(내부 1명, 복지부·학계·현장전문가 등 외부 3명)
- 심사방법:
- 기존기관: 22년 사업평가 결과와 23년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점수 80점 이상의 기관 (기준 미달 시 예산 삭감 예정)
- 신규기관: 23년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점수 80점 이상의 기관

진행절차

* 세부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

